

안양시시정전략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정 2009. 4. 24 훈령 제522호
일부개정 2014. 1. 17 훈령 제609호(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안양시의 주요 역점시책 및 특별과제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양시시정전략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“안양시시정전략추진단”(이하 “전략추진단”이라 한다)이란 안양시의 주요 역점시책 및 시장이 지정한 특별과제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수립 및 추진을 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.

제3조(소속) 전략추진단은 안전행정국 소속으로 한다. <개정 2014. 1. 17>

제4조(대상사업) 전략추진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중앙 또는 경기도에서 이양되는 사무의 시행초기 사업
2. 대규모 지역개발 사업
3. 그 밖에 주요 역점시책이나 현안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구성) ① 전략추진단은 단장과 팀장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, 시 산하 공무원 중에서 해당사업과 관련한 전문성,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우수인력으로 구성한다.

② 단장은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하고, 팀장은 6급 공무원으로 하며, 단원은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.

③ 전략추진단의 구성인원은 사업성격, 사업규모, 사업량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.

제6조(임무) ① 전략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대상사업의 법률적·지역적 타당성 검토와 사업추진의 지원
2. 인·허가 사업의 법률적·환경적 적합여부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인·허가 여부 결정
3. 대상사업의 중간점검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강구
4. 대상사업의 준공 전 사전점검을 통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강구
5. 그 밖에 대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

안양시시정전략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제7조(운영) 전략추진단의 운영은 해당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(책임과 권한) ① 전략추진단은 대상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진다.

② 단장은 전략추진단을 총괄 운영·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.

제9조(인센티브) ① 전략추진단의 구성 공무원 중 업무추진실적이 현저하고 탁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평정규칙」 제25조의2에 따라 실적가점을 부여 할 수 있다.

제10조(예산) ① 전략추진단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 등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「안양시 정원초과인원관리 규정」과 「안양시 21세기 시정기획단 설치 운영 규정」을 폐지한다.

부칙 <2014. 1. 17 훈령 제609호,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① 생략

② 안양시시정전략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행정지원국”을 “안전행정국”으로 한다.

③ 부터 ⑤ 까지 생략